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

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

[시행 2022. 4. 20.] [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-7호, 2022. 4. 20., 제정]

방송통신위원회(디지털이용자기반과), 02-2110-1526, 1536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)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 I. 일반기준 제2호·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 I. 일반기준 가호·나호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.

제3조(재검토 기한)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2-7호,2022.4.20.>

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